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. 12. 11 선고 2019가단104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 2019. 11. 13.

판결 선고 2019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가. 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적재된 고철 및 산업폐기물을 수거하고,
나. 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.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)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정순열

별지